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구 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공사]

□ 점검일시 : 2019.05.09 (목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이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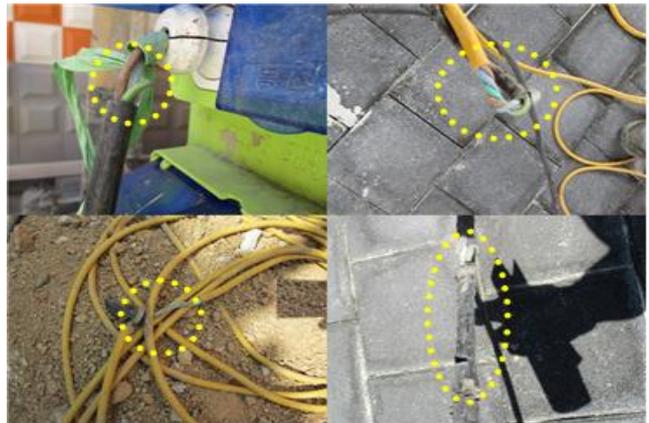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현재 본 안전난간을 설치 진행중이나, 민원에 의한 지연설치, 작업 전 가설난간 선 해체등의 사유로 추락단부가 노출되고 있으니, 접근방지시설, 안전난간 등을 즉시 설치하고, 위험 노출 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시기관리 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

- 접지선 단락, 외부 피복손상 된 작업용 전선들이 현장에서 다수 발견되었음. 전수 조사하여 보수 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(전기 기계 기구의 접지)제313조(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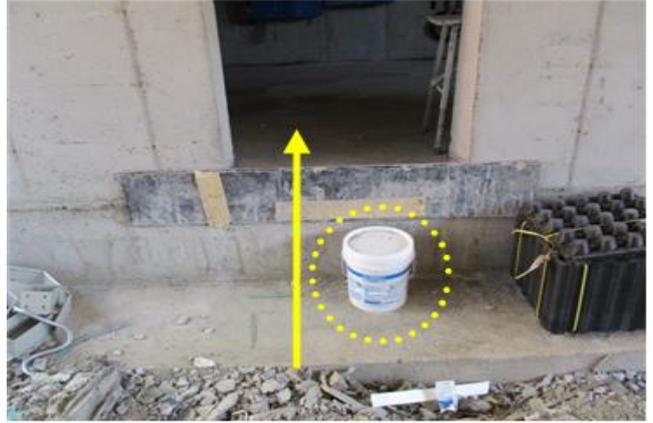
○ 건설기계 안전(건축부)

- 조경구간 잡석 포설 작업시 굴삭기를 사용하여 1층에서 지하1층으로 신호수 없이 하역작업을 진행하면 낙하 위험이 있으므로, 작업구간에 신호수 및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접근방지시설을 설치 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(접촉의 방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관리실로 들어가는 입구는 단차가 발생하여 원형 플라스틱통을 사용하여 통로로 사용중임. 근로자 통행시 전도위험등이 있으니 계단등을 설치하여 관리요망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서측면 계단 주변 폐자재 청소가 안되어 있어 근로자 통행시 전도 위험이 있으니 청소요망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서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분전반은 불안정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어 낙하 위험이 있고, 안전점검등이 어려워 관리가 안되는 상태이므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요망

